

'25년 대전·세종 모범 중소기업 포상 계획

□ 개요

- 목적 : '25년 연말을 맞이하여 산업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·벤처·소상공인 등을 선발·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격려
- 훈격 및 규모 : 중소기업부 장관 표창(10점*)
대전·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표창(20점 내외)
 - *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·세종지회,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 회원사 대상 장관표창 1점 이상 배정
- 대상 : ①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모범 대전·세종지역 소재 중소기업, 소상공인 및 임직원
② 중소기업 육성·발전에 기여한 대전·세종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·협단체 및 임직원

□ 대상별 수공기간

※ 기간산정 : 수공 발생 기간을 연·월·일까지 계산하되, 포상 추천일 (개별 표창 계획 상 후보자 접수 마감일)까지 산정

- 일반국민 :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
- 공무원 : 실근무기간* 2년 이상, 해당 분야 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
 - * 실근무기간 :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,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
- 외국인 :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
 - * 청장 표창은 수공기간 1년 이상

□ 신청 기간 : '25. 11. 10.(월) ~ 11. 25.(화) 18:00까지

□ 신청(추천) 방법

- 아래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(hosubi86@korea.kr)로 송부
 - * 제출서류 중 서식1,2는 한글 파일 제출, 서식3,4,5는 pdf 파일 제출
 - ** 서류 제출 후, 대전·세종중소벤처기업청의 정상 접수확인 메일 미수신인 경우 문의처로 문의

○ 제출서류

| 구 분 | 단 체 | | 개 인 |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행정 기관 | 민간 단체 | 공무원 | 민간인 | |
| 공적개요서(서식 1) | ○ | ○ | ○ | ○ | 계량화하여 구체적인 실적을 개조식으로 작성(hwp 파일) |
| 공적조서(서식2-1 또는 서식2-2) | ○ | ○ | ○ | ○ | 조사자 서명 및 추천기관 직인란은 공란으로 작성(hwp 파일) |
|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(서식3) | | | ○ | | 직인날인 스캔본 |
| 장관 포상 동의 및 확인서(서식4) | ○ | ○ | ○ | ○ | 직인날인 스캔본 |
| 추천자 현황 (공무원, 일반국민 공통)(서식 5) | ○ | ○ | ○ | ○ | 직인날인 스캔본 |

□ 포상자 선정

- 제출 서류에 대한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내부 결격사유 조회 및 심의 후 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

□ 추진 일정

- 접수 : '25. 11. 10.(월) ~ 11. 25.(화) 18:00
- 결격사유 조회 및 심의 : ~'25. 12. 3.(수)
-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: ~'25. 12. 5.(금)
- 시상식 : '25년 12월

□ 표창 제한 및 공통 추천 제한 사항

- (이중표창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
 - * 예시 : ① 동일한 공적으로 복수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경우
 - ② 동일한 공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표창되는 경우
- (공통 추천 제한) 「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」 제7조(추천제한)를 따르되, 상위 규정(정부포상 업무지침 등)과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

< 「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」 제7조 (추천제한) >

-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(정부포상 업무지침 포함)에 의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
- 갑질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
-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자(우리부 장관 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('23.12.13)까지 2년 미경과자)

- (재포상금지) 기존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다시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으려는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추천(추천일)될 수 있음

* 근거 : 「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」 제7조(추천제한) 제7호

※ 재포상 금지 특례 : 정부포상(훈·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, 모범공무원 등) 수여자 또한 수여일로부터 포상추천일까지 2년 미경과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

* (예) '24.6.30일자로 모범공무원 포상 → '26.6.29일까지 추천 금지

□ 대상별 추천 제한 : **현행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(행안부 지침)을 준용**

※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상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

○ 일반국민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형사처분 받은 자 중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- 최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- 최근 「공정거래관련법」을 위반한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- 최근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

○ **공무원**

-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-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(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)
- * 다만,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,
- *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

<주요비위란>

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)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

- 1.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-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(橫領)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한 경우
 - 가.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기금
 - 나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
 - 다.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
 - 라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
 - 마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 - 바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
 - 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1의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
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

4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
5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
6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
-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-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처분을 받은 자
 - *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, 군인의 경우 감봉·근신·견책)가 사면되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,
 - *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
- 「국가공무원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 제3항 제1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

⇒ 선출직 공무원은 추천 제한
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※ (추천 제한 고려)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 상 경고·주의를 받은 자는 처분 후 1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 등 인사관리에 반영 (불이익 부여)

* (근거)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(인사처 예규)

○ 외국인

- 과거 망언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(기관)
-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,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 (기관)

○ 단체 표창
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* 다만,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
-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

- 최근 3년 이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고발·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

* 각각의 세부기준은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 일반국민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

- 수사 중이거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

□ 문의처

- 대전·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양홍석 주무관
(☎ 042-865-6122)

참고

포상신청 제출양식

□ (서식 1) 공적개요서(공무원, 일반국민 공통)

공 적 개 요

| 연번 | 추천 부서 | 소속 (부서) | 직급 | 성명 (생년, 나이) | 주요 업무경력 및 공적 (최근 2년 이상) | 후보자 추천 사유 | 수공기간 | 과거 포상 (장관 표창 이상) |
|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OO과 | 후보자의 소속 작성 | (예시) 행정 사무관 대표 이사 | OOO (88, 34세) | (공무원) ■ OO과('22.3월~) ○ 공적과 관련된 업무 기술 ■ OO과('20.1월~'22.3월) ○ 공적과 관련된 업무 기술 (일반국민) ■ 공적과 관련된 내용 요약 작성 | (예시) ■ OO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OO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추천함 | (예시) 0년 0월 0일 | (예시) 중기부포상 (연말 업무유공, '23.12.28) |

□ (서식 2-1) 공적조서(개인/공무원, 일반국민 공통)

공 적 조 서

| | | | |
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성 명 | (한자) | | |
| 주 민 번 호 (생 년 월 일) | | 군 번 (군 인 의 경 우) | |
| | | 국 적 (외 국 인 의 경 우) | |
| 주 소 | | | |
| 직 업 | | 소 속 | |
| 직 위 | | 직 급 · 계 급 | |
| 추 천 훈 격 | 중소벤처기업부장관 | 추 천 순 위 | |
| 공 적 분 야 | 산업경제 | 공 적 기 간 | |
| <p>공적요지(70자이내)</p> <p>※ 60~70자 작성</p> <p>※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, 수식어는 지양</p> <p>※ ~~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</p> | | | |
| 조 사 자 | | | |
| 소 속 | | | |
| 직 위 (직 급 · 계 급) | | 성 명 | (서명 또는 인) |
| <p>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추천관 직 위 성 명 (서명 또는 인)</p> | | | |

- * 조사자 : 각 과장, 행정실장 (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)
- * 추천관 : 각 국장, 지방청장, 교장 (대상자가 실·국장급인 경우 차관)

주요 경력

연 월 일

이력사항

과거 포상기록(훈장, 포장, 표창별로 기록)

수여일(연 월 일)

공 적 내 용

□ (서식 2-2) 공적조서(단체)

공 적 조 서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단 체 명 | | | |
| 주 소 | | | |
| 법 인 번 호 | | 대 표 전 화 번 호 | |
| 사 업 자 번 호 | | | |
| 대 표 명 | | | |
| 주 민 번 호 | | | |
| 주 소 | | | |
| 소 속 | | 연 락 처 | |
| 추 천 훈 격 |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| 추 천 순 위 | |
| 공 적 분 야 | 산업경제 | 공 적 기 간 | |
| <p>공적요지(70자이내)</p> <p>※ 60~70자 작성</p> <p>※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, 수식어는 지양</p> <p>※ ~~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</p> | | | |
| 조 사 자 | | | |
| 소 속 | | | |
| 직 위 (직 급 · 계 급) | | 성 명 | (서명 또는 인) |
| <p>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추천관 직 위 성 명 (서명 또는 인)</p> | | | |

- * 조사자 : 각 과장, 행정실장 (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)
- * 추천관 : 각 국장, 지방청장, 교장 (대상자가 실·국장급인 경우 차관)

주요 이력

연 월 일

이력사항

과거 포상기록(훈장, 포장, 표창별로 기록)

수여일(연 월 일)

공 적 내 용

□ (서식 3) 인사기록요약서(공무원만 해당)

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

| | | | | | |
|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
| 1) 소속기관 | | 2) 직 위 | | 3) 직 급 | |
| 4) 성 명 | 한글 | 5) 생년월일 | | (만 세) | |
| | 한자 | 6) 군번(군인) | | | 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재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년퇴직 <input type="checkbox"/> 명예퇴직 <input type="checkbox"/> 의원면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| | | | | |
| 공무원의종류 | 재 직 기 간 | | 12) 특 정 직 | ~ (년 월 일) | |
| 8) 일 반 직 | ~ (년 월) | | 13) 교 원 | ~ (년 월 일) | |
| 9) 별 정 직 | ~ (년 월) | | 14) 군 인 | ~ (년 월 일) | |
| 10) 기 능 직 | ~ (년 월) | | 15) 군 무 원 | ~ (년 월 일) | |
| 11) 고 용 직 | ~ (년 월) | | 16) 기타() | ~ (년 월 일) | |
| 합 계 ㉑ | | | 년 월 일 | | |
| 17) 제외기간 | | | 직위해제 : ~ (년 월 일) | | |
| 합 계 ㉒ | | | 년 월 일 | | |
| 18) 실 재직기간(㉓-㉔) | | 년 월 일 | | 19) 추천훈격 | |
| 20) 징계, 형벌 | 종 류 | 일 자 | | 21) 과거표창 | 포 상 명 |
| | 해당없음 | | | (모범, 총리 표창이상) | 수여일자 |
| 22) 작 성 자(인사담당자) | | | 23) 확 인 자(인사담당관) | | |
| 직급 | 성명 | (인) | | 직급 | 성명 |
| | | | | | (인) |
|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. | | | | | |
| 년 월 일 | | | | | |
| 기 관 명 : (직인) | | | | | |

- * 작성자 : 본부 (인사담당자), 소속기관 (인사담당자, 지역정책과장·행정실장)
- * 확인자 : 본부 (운영지원과장), 소속기관 (지역정책과장·행정실장)
- * 기관명 : 본부 (중소벤처기업부), 소속기관 (해당 기관명)

□ (서식 4) 장관 포상 동의 및 확인서(공무원, 일반국민 공통)

포상에 대한 동의서

□ 포상 후보자

| | | | |
|--------|--|-------|--|
| 성명 | | | |
| 소속(주소) | | 직위(급) | |

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「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」(이하 ‘공적심사규정’)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※ 특히, 아래의 ‘신고의무 사항’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「공적심사규정」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

■ 신고의무 사항

-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 된 경우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-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
- 과거 형사처분으로 인해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
- 그 밖의 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
-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

2. 「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」 등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5. . .

성명

(서명)

< 중소기업부장관 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>

중소벤처기업부(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22조에 따른 표창기관)에서는 장관표창 업무*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,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관련 법령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2항, 제17조제2항)

* 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, 표창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, 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, 수여증명서 발급 및 표창 재교부

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내역

| 항목 | 수집·이용 목적 | 보유·이용기간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성명, 군번(군인), 국적(외국인), 주소, 소속, 직업, 직위, 직급·계급, 공적요지, 공적내용, 공적기간, 주요경력, 과거 포상기록 |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| · 공적조서 및 의결서 : 준영구 · 추천서 및 동의서 : 5년 · 그 밖의 증명서류 : 1년 |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

미동의

□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내역

| 항목 | 수집·이용 목적 | 보유·이용기간 |
|-----------------|---|--|
|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※ 근거 :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27조 | · 공적조서 및 의결서 : 준영구 · 추천서 및 동의서 : 5년 · 그 밖의 증명서류 : 1년 |

※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

미동의

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| 항목 | 제공받는 자 | 제공 목적 | 보유·이용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 행정안전부(행정정보공공이용) | 추천제한 사유 확인 |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|

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

미동의

년 월 일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 귀중

□ (서식 5) 추천자 현황(공무원, 일반국민 공통)

장관 포상 추천자 현황

○ 포상명 : 00 유공

| 소속 | 직위 (직급) | 성명 (단체명) | 수공 기간 | 추천제한 조회결과 | | | | | | 징계 (연도·종류, 사면) | 물의야기 (일사·내용)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산업 재해 | 공정 거래 | 임금 체불 | 세금체납 | | | | |
| | | | | | | | 국세 | 관세 | 지방세 | | |
| (일반국민) | 대표이사 | | 00년 00월 | 중대재해 (00-000호) | 고발1 과징금1 | 해당 | 해당 | 해당 | 해당 | | 무 |
| (공무원) | 행정주사 | | | | | 미해당 | 미해당 | 미해당 | 미해당 | '00 견책 (사면) | 언론보도 (00.00.00) |
| (단체표창) | - | | | | | | | | | | |

* 범죄경력 조회는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정부포상만 조회 가능

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,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 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,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 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, 징계, 수사개시 기타 공·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5. .

작성자 (포상추천부서명) 담당 (직급) (성명) (서명)

확인자 (포상추천부서명) 과장 (직급) (성명) (서명)

<참고. 추천 제한사유 조회경로 >

- 국세·관세·지방세 :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www.share.go.kr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확인

< 참고 > 국세·관세·지방세 추천제한 기준 변경 사항

| 기존 | 개정(2020.1.1. 시행) |
|---|---|
|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| ⇒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|

- 산업재해 : 고용부 →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 목록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
- 불공정행위 : 공정위 → 심결/법령 → 범위반사실조회
- 임금체불주 : 고용부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- ※ 국세·관세·지방세 : 우리부 장관 표창,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직접 조회
- ※ 산업재해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주 : 우리부 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는 위 경로로 직접 조회하고,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'정부포상업무지침'에 따라 제한사유별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조회 요구